

중소기업 구조조정 특별조치법

第1章 總則

제1조(目的) 이 法은 中小企業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전환 지원등 경영안정 지원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中小企業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①이 法에서「中小企業者」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中小企業基本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中小企業者

2. 中小企業協同組合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

3. 産業技術研究組合育成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産業技術研究組合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産業技術研究組合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

②이 法에서「技術開發」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 및 당해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③이 法에서「生産技術」이라 함은 기업의 재료 및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획 설계 생산공정 포장 및 출하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말한다.

④이 法에서「中小企業情報化」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하여 공장의 자동화, 경영관리의 전산화, 유통관리의 자동화 및 중소기업 내외의 전산망을 구성하는 등을 말한다.

⑤이 法에서「事業轉換」이라 함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전환 업종이 전체 사업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 등을 말한다.

第2章 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

제3조(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의 設置)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 촉진 및 사업전환 지원등 경영 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 (이하「基金」이라 한다)을 設置 한다.

② ①項의 기금규모는 1989년에 5천억원, 1992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基金의 造成) 基金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응자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者의 出捐金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収益金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5조(基金의 운용 管理) ①基金은 상공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다만 상공부장관은 中小企業振興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으로 하여금 기금을 위탁하여 운용 관리하게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기금운용 계획을 작성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基金의 使用) ①基金은 중소기업자의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응자한다.

1. 기술개발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2. 기술도입에 의한 시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

3. 중소기업 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

4. 정보화 사업 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5.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生産技術研究院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研究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 사업

6. 사업 전환 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 촉진을 위한 사업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信用保證基金이 신용보증의 특례조치를 한 결과 신용보증기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第3章 中小企業技術開發促進

第1節 中小企業技術開發促進事業

제7조(中小企業의 技術開發計劃의 수립) ①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하「技術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술개발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기술개발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異業種간의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4.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技術開發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技術開發 제품에 대한 優先購買等)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우선구매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관리하는 주무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등 공공기관 2. 민간단체 또는 기업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등 공공기관은 우선 구매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등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技術人力의 養成支援等) ① 정부등 공

공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등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각급교육 훈련기관 및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國際技術交流 支援등)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외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節 中小企業 情報化事業

제11조(中小企業의 情報化計劃의 수립) ①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정보화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체신부장관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정보화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情報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情報化計劃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소기업정보화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정보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소기업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情報化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大統領令이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中小企業 情報化 示範事業) ① 정부는 중소기업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정보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第3節 生產技術研究機關

제13조(生產技術研究院의 설립) ①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생산기술연구원(이하「研究院」이라 한다)을 설립 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원은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을 위한 상담

2. 시험연구시설 설비의 제공

3. 전문 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4.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5. 생산 기술 연수교육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연구원이 아닌자는 생산기술 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出捐 등) ① 정부는 연구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소요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國有財產의 無償讓與 등) ①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국유재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와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民間生產技術研究所의 설립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생산기술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

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研究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에 관하여는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4章 中小企業經營安定支援

제17조(事業轉換計劃의 수립) ①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事業轉換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전환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시설의 해외 이전에 관한 사항

3. 사업전환에 따른 고용 대책에 관한 사항

4. 사업전환에 따른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자(이하「組合」이라 한다)가 그 구성원의 사업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사업전환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전환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유휴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 생산 시설을 해외에 이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출입은행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수출자금 및 기금에서 용자지원

2. 대외 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 경제협력기금의 용자지원

3. 해외투자 목적으로 시설을 해외이전 할 경우 수출입은행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자금 및 수출보험법 제29조 3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

원을 위하여 신용보증 기금의 우대 신용보증 실시

5. 해외이전에 따른 제반 정보제공

제19조(고용안정 대책의 강구)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되는 실업의 예방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전직훈련의 실시와 훈련수당 지급

2. 사업전환 중소기업자가 밀집되어 있는 공업단지 안에 공동직업 훈련원 설립지원

3. 취업알선 기타 직업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조치

제20조(경영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전환될 사업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지도 또는 연수를 우선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21조(공장용지의 우선공급) 정부는 중소기업자 및 조합에 전환될 사업에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농공지구에 우선입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우선입주

3.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농공지구 지정

제22조(事業轉換의 支援)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또는 기능인력 양성기관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업훈련 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분담금의 감면

2. 직업훈련 촉진 기금에 의한 훈련용 시설 기자재 구입자금의 융자

3. 훈련용 기자재의 취득에 대한 기금의 융자

제23조(긴급경영안정지원)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대출금의 상환연기등 긴급 경영 안정지원을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감소 수입증대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애로가 발생한 경우

2. 원자재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휴·폐업 또는 조업중단등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第5章 補則

제24조(稅制支援) ①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3장에 의한 기술개발 촉진 및 제4장에 의한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 규제 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한 조세상의 특별 조치를 적용 한다.

1. 중소기업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기술개발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게기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가, 기술개발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특별 감가 상각비를 계상하여 각 과세 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나, 기술개발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시설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투자금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

다, 기술개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지출한 비용(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 준비금과 상계하는 방법

2. 중소기업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정보화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업을 위하여 전자계산 조직과 주변기기를 취득한 때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과 연구소에 대하여는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의 적용 등의 예에 따라 법인세 과세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

4. 중소기업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계획에 따라 사업용 자산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특별부

가세 또는 양도 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전환 후 일정기간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중소기업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전환 계획에 따른 사업전환시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후 일정기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한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안정 지원시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25조의(신용보증기금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에 의한 신용보증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26조(정보의 제공 및 지도) 정부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의 사업, 정보화의 사업, 사업전환을 실시함에 필요한 정보의 공동활용 기술정보의 제공 및 지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위탁) 상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중소기업 진흥공단, 생산기술 연구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附 則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법은 제14조 내지 제17

조의 규정외에는 시행일로 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업발전법등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6호를 신설한다.

5. 중소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에 의한 생산 기술 연구원 및 연구소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② 기술개발 촉진법등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3 제1항 제6호를 신설한다.

7. 중소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에 의한 생산 기술연구원 및 연구소

제4조(경과조치) ① 이 법의 기금과 중소기업 진흥기금 및 공업 발전 기금의 기능이 종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 유효 기간중 종복되는 사업 및 관련 자금을 이 법의 기금에 이관한다.

② 중소기업 진흥법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환 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전환 계획에 따른 사업전환의 경우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진흥법등 제9조 제10조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이 법의 사업전환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6조(생산 기술 연구원의 설립 방법) 연구원은 한국 기계 연구소 부설기업기술지원센타 등을 기초로 관련된 연구 조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설립한다.

쌍원산업 사무실 이전

지난 1월21일 석유보일러를 비롯해 연탄보일러용 등유버너, 연탄·유류겸용 보일러를 생산, 시판해온 쌍원산업(대표: 김동명)이 공장과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현대식 시설과 전문 기술진으로 경영시스템을 갖추었다.

공장: TEL 865-9446, 9464

사무실: TEL 234-5515, 6235, 863-7562, 1041

이전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124-7